

제 3010호	화순군공보	발행 일 : 2021년 5월 13일 발행 인 : 화 순 군 수 발행 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예 규									
화순군 예규 제8호		화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 1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8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792호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화순군 공고 제2021-798호		차량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5							
화순군 공고 제2021-804호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엽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6							
화순군 공고 제2021-806호		제2회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27							
화순군 공고 제2021-808호		화순 하수처리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30							
화순군 공고 제2021-817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6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략									

화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5월 13일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 예규 제 8호

화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

화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화순군 소속

구성원(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화순군의 통제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
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군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화순군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

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가정활동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가정활력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사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4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폭력예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안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외부위원이 참석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 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 수 일	20 . .		담당자	(서명)	
담 당 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 리 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 위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2. 공개사화()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서명 또는 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506-16 외 6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7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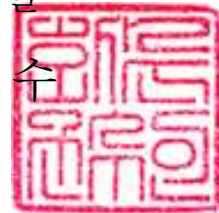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화순군 공고 제2021-792호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 12. 8.)에 따라 “화순군체육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화순군체육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안 제7조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둔다.”

다. 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 개정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화순군체육회 회장이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 : 2021. 6. 9.]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20. 5. 13. ~ 6.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일까지 화순군수(참조 : 스포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aglory@korea.kr

2) 주소 : (우)5814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

3) 팩스 : 061-379-37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스포츠산업과(전화 : 061-379-35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한다”를 “화순군체육회 회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화순군 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u>2. 관서운영 기본경비</u> <u>3. 사무시설 임차료</u> <u>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u>
제7조(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 1. ~ 3. (생략)	제7조(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u>둔다</u>.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u>포함하여 1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부군수</u>가 되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 <u>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u>----- -----. ② ----- ----- <u>군수</u>-----

고, 협의회 부위원장(이하 “부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
서 선출한다.

③ · ④ (생 략)

-- 화순군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2항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자 동 차		이 해 관계인	이해관계 내 용	송 달 지	반송사유
차 량 번 호	소 유 자				
95저2597	심 *택	박*남	저당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천변길 **	이사감
		김*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	수취인 불 명

3. 공고기간 : 2021. 5. 11. ~ 5. 26.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1. 5. 28. 이후
5.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예고통지 하오니 **말소 등록 예정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진말소 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1)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화 순 군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
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사전안내서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안내엽서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지
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
함투함,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1. ~ 2021. 5. 26(15일간)

2. 대 상 자 : 불임첨부

3. 송달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사전, 유효경과)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4. 문 의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 (전화 061-379-3462)

5. 유의사항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
6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번호판 영치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11.

화 순 군



제2회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 등)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화 순 군 청



- - - - - 다 음 - - - - -

1. 매각대상물건 및 공매예정가격

차량 번호 : 04부7888 세라토 공매예정가격 : 300,000원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6월 3일 24시

※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기한일의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마감일시: 2021년 5월 25일 - 2021년 6월 3일 24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1년 6월 4일 14시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21. 5. 24.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 보증금을 10/100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또는 타인 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668-01-005470, 예금주 : 화순군청**

다.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라. 공매보증금 반환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 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5.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단독입찰 가능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간 10일)

가.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차량조회 내용참조)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군으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군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서를 한 후 분실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마.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0.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규격,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의사항

-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화순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마.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징수팀 (☎061-379-3392) 및 오토마트(☎1811-89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화순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최적의 건조(연료화시설)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화 순 군 수



-
1. 모집기간 : 2021. 05. 12.(수) ~ 5. 18.(화) 18:00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모집)
 3. 모집분야 : 토목, 상하수도, 환경, 기계 관련분야
 4. 응모자격
 - 가. 토목 및 상하수도, 환경, 기계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 나. 하수도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7급 이상의 실무담당 공무원
 5. 자격제외자
 -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화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 시설) 증설 Q=13m ³ /일	3,800	2021년 ~ 2024년	

나.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의 적정성
-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자원 및 유지관리용이성
- 가동의 적정성

7. 예비평가위원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1. 05. 12.(수) ~ 05. 18.(화) 18:00

나. 접 수 처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 E-mail 접수시 : yangggil2@korea.kr

※ 방문·우편 접수시 : 우)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 제출 시 전화(061-379-3872)로 접수유무 확인 바람

8.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자 : 2021. 05. 28. 예정

나. 선정인원 : 7명(위원장 포함)

다.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7명씩 추천
- 다빈도,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라.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위원 개별 통지(2021. 05. 28. 예정)

9. 제안서 평가일시

- 일시/장소 : 2021. 06. 09(수) ~ 6. 15.(화) 서면 평가

※ 군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 통지

10. 제출서류

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나.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등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내주신 자료는 “화순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완료 시 해촉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온라인(서면) 수당 등 지급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79-3872)로 문의

붙임 : 1.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화순 하수처리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작성자 : (인)

화순군수 귀하

【붙임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1년 05월 00일 “화순 하수처리처리 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 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내주신 자료는 “화순 하수처리처리 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신기술·특허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 화순군 에서 시행하는 “화순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건조(연료화시설) 공법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으로 등록하기 위해 평가위원(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 · 이용목적 : 평가위원(후보자)의 적정성여부검토 및 평가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계좌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권고사항 : 평가위원(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평가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8개의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평가위원 후보자 성명: (인)

화순군수 귀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10.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5. 10. ~ 2021. 6. 4.(25일)
3. 의 건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